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제6동 자치회관 운영세칙

제정 : 2001. 2. 14.
개정 : 2003. 4. 10.
개정 : 2003. 6. 24.
개정 : 2003. 9. 30.
개정 : 2009. 5. 7.
개정 : 2011. 3. 2.
개정 : 2012. 4. 23.
개정 : 2013. 10. 31.
개정 : 2017. 11. 7.
개정 : 2018. 8. 8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(이하 조례)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제6동 자치회관(이하 자치회관) 운영을 위해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원칙)**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위원회 (이하 위원회)에서 심의하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.

## 제2장 자치회관의 운영

**제3조(운영)** ① 자치회관의 운영은 조례 및 동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하며 자치회관의 이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의실
2. 다목적실

3. 컴퓨터실

4. 체력단련실

5. 작은도서관

②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하며, 수강생의 참여도,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발전에의 기여도. 운영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도입, 존속 및 폐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동장이 결정한다.

**제4조(수강생 모집)** 수강생 접수는 수강료 수납과 동시에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수강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로 관리하여 다음 접수기간 중 전화,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안내하도록 한다.

**제5조(수강료의 감면)** 수강료의 감면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별표 1로 정한다.

**제6조(이용기준)** 프로그램신청 수강생의 이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.

1. 주민등록상 당해 동에 거주하는 자

2. 우리 동에 거주하였다가 전출하여 영등포구 관내 타동에 거주하는 자

3. 우리 동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으나 생활근거지가 우리 동인 자

4. 영등포구 관내 거주하는 자.

5. 관외 거주자는 정원범위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.

**제7조(기간제 및 수료제 실시)** 대기자가 많은 인기 프로그램, 또는 일정기간동안 기술・지식 습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과정별 분기, 반기 등

기간제나 수료제를 실시하여 수강희망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 및 수강생들의 성취감을 고취한다.

**제8조(동호회)** ① 동장은 개설시기가 1년 이상이면서 새로 등록한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성인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호회로 전환할 수 있다.

② 1항 이외에도 주민이 동호회를 구성하여 회원명단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가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자치회관 시설 사용 지원
2. 작품발표회・전시회 참여시 실비 지원
3. 필요물품 및 재료비 등 운영비 지원

④ 동호회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한다.

1. 영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를 한 때
2. 자치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
3. 그 외 공익 목적에 위배된다고 동장이 판단하는 경우

**제9조(동호회 운영)** ①동호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,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②동호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부를 작성, 분기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동장은 동호회에게 시설 사용 시간 변경 또는 사용 일시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0조(사용승인의 제한)** 시설대여는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정치적인 목적 및 영  리적인 목적 외에 승인하되, 착오로 기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, 변경 또는 기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동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.

**제11조(이용의 제한)** 동장은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정신장애 및 음주자
2. 각 강좌 프로그램의 운영특성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 및 지체 부자유 장애인.
3. 청사관리 또는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
4. 기타 공익목적상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

**제12조(운영경비 집행)**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집행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하되,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, 저소득층 지원 등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.

**제13조(회계감사)** ① 감사는 자치회관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, 결산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주민자치위원장은 수강료 등 운영경비에 대하여 매년(반기별 6월, 12월) 2회 이상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가 종료된

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및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주민자치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 회계감사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4조(자원봉사자의 의무)**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
1.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.
2.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봉사자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.
3.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기간 전에 동장에게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4. 자원봉사자는 직무수행 중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.

**제15조(자원봉사자 모집, 관리)** 동장은 같은 목적을 갖는 자원봉사자끼리 동호회 형성을 유도하고 동 행사 시 또는 특수사업 시 동호회가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한다.

## 제3장 강사관리 및 운영

**제16조(강사운영)** 강사관리 및 운영은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.

**제17(강사료 지급)** ① 정기 운영 강좌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되, 외래특강 또는 비정기 한시성 강좌 프로그램의 경우 본 기준을 적용치 않고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모든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위원회에서 원천징수 후, 동장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.

## 제4장 주민자치위원회

**제18조(위원회 운영)** 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은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제22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.

**제19조(위・해촉)**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 및 해촉 또는 재위촉할 때 자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발표회, 전시회, 박람회 견학을 포함한 각종 교육・연수, 정기회의 등의 참여실적과 자원봉사실적, 그리고 주민자치의식 및 사회적 덕망 등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및 해촉 또는 재위촉 한다.

② 자치위원의 자동 해촉 권고 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1, 자치위원회의(정기, 임시)에 (5회)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위원,

2. 자치위원회의에 당해년도 (50%)이상 불참한 위원.

(단) 자치위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의 사망, 혼인 및 치료입원 과 자치위원 본인의 해외출장 및 여행 시는 제외하되 회의 개최일 사전에 통보되고. 사후에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의 위촉 시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・해촉사항을 대장에 기재한다.

④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회장을 2명이내로 운영 할 수 있다.

**제20조(분과위원회 운영)** ①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, 전 위원은 분과위원회별로 참여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각 분과에서 운영위원장 1인을

위원회의 에서 협의하여 호선한다.

② 분과위원회는 실정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특화하기 위하여 신규 및 통합, 조정 운영할 수 있되 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운영 한다.

1. 기획-재정-프로그램 운영분과위원회
2. 홍보-교육-문화 분과위원회
3. 복지-자원봉사 분과위원회
4. 지역사회진흥 분과위원회

**제21조(분과위원회 활동)** 각 분과위원회는 매월 정례적인 활동을 실시하고, 위원회 정기회의 시 활동상황을 보고한다.

**제22조(정기회의)**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한다. 단, 법정 공휴일 시는 그 익일로 한다.

**제23조(명예주민자치위원)** 다문화가족・대학생・청소년을 명예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인적구성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

**제24조(주민자치위원 회의 및 교육)**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・벤치마킹 ・아카데미 및 교육의 이수, 위원회의 참석 등을 의무화한다.

**제25조**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결정한다.

## 부 칙

1. 이 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 (제5조 관련)

| 감 면 대 상 | 감면비율 |
|---|---|
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| 수강료의 1/2감면 |
|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3급 이상 장애인 | |
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| |
|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저속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| |
|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·소녀가장 | |

[별지 제1호 서식]

# 동호회 설립 신청서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대표자 성명 | | 주민등록번호 | |
| 주 소 | | 연락처 | |
| 직 업 | □ 회사원 □ 주 부 □ 학 생 □ 근로생산직 □ 전문직 □ 자영업자 □ 기 타 | | |
| 활동 경력 | | | |
| **설립 동호회 설명** | □ 동호회 명칭 :<br>□ 활동분야 :<br>□ 회원 수 :<br>□ 동호회 설명 :<br><br>□ 활동계획 : | | |
| 희망시간 | □ 매월(주) 회 요일 시 ~ 시까지 ( 시간) □ 언제든지 | | |
| 본인은 영등포구 신길제6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자 신청합니다.<br>년 월 일<br>신청인 : (인) | | | |

[별지 제2호 서식]

# 신길6동 자치회관 (　　)동호회 출석부

월/일

| 연번 | 직 책 | 성 명 | 성별 | 연령 | 전화번호 | 참 여 자 서 명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